

<p>항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</p> <p>3.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제12조 제1항 제9호 중 “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”를 “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”로 하고, 동 조동 항 제13호를 동조동 항 제16호로 하며, 동조 동 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2항 중 “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”를 “제1항 제1호 · 제2호 · 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”로 한다.</p> <p>13. 유통사업자 14. 건설사업자 15. 관광호텔사업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자하였거나 응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3517호 서울특별시실업대책 위원회조례 부칙 제2항 중 “2000년 6월 30일”을 “2001년 6월 30일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의 산업경제국(소비자보호과)란 중 사무명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							
<p>주 관 국</p> <p>산업경제국 (소비자 보호과)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거법령 (위임근거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 장부 · 서류의 확인 · 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input type="checkbox"/> 담배사업법 제13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15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2조의2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9조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 장부 · 서류의 확인 · 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	<input type="checkbox"/> 담배사업법 제13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15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2조의2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9조	구청장		
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						
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 장부 · 서류의 확인 · 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	<input type="checkbox"/> 담배사업법 제13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15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2조의2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29조	구청장							
<p>별표의 환경관리실(폐기물시설과)란 중 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관 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거법령 (위임근거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 · 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 · 자료의 제출 명령, 관계서류 · 시설 · 장비 등 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input type="checkbox"/>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2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5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63조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	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 · 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 · 자료의 제출 명령, 관계서류 · 시설 · 장비 등 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	<input type="checkbox"/>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2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5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63조	구청장	
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					
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	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 · 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 · 자료의 제출 명령, 관계서류 · 시설 · 장비 등 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	<input type="checkbox"/>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2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45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법 제63조	구청장						
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중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시설명관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다음에 “- 시립강북 노인종합복지관”, “-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”, “-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”, “-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”을 신설하고, 같은 표 중 문화관 광국(체육청소년과)란 시설명관의 시립청소년 정보문화센터 다음에 “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”를 신설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중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사무명관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다음에 “○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, “○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, “○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, “○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”을 신설하고, 같은 표 중 문화관광국(체육청소년과)란 시설명관의 시립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다음에 “○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관리운영”을 신설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아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중 제1호·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5.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또는 이사장 해임건의 ④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예산실장, 시정기획관 및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장과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</p>	<p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투자기관이 장은 다음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기관의 장은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의 경영목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를 조정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완료후 그 결과를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⑥위원장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사장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를 삭제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11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중랑·탄천·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”를 “서울특별시중랑·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”로 한다.</p> <p>[별표6]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[별표6] 하수처리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(제111조제2항 관련)</p> 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--	---